

ESG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(ESG) 정책과 ESG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이사회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재심사 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4조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는 이사회 내 심의 기구이며, 이사회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.

제5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위원의 이사 임기까지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고,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2장 회 의

제8조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9조(회의의 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0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ESG 기반의 주요 투자의사결정 심의
 - 2.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ESG 중장기 전략 및 당해년도 중점 활동 계획
 - 2. 국내외 ESG 평가 결과 및 ESG 개선 사항
 - 3. 주요 비재무 이슈 사항 및 대응 방안
 - 4.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
 - 5.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의사록)

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.

제13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4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

본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